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선교 · 김소희 · 박충권
구자근 · 김상훈 · 서천호
윤상현 · 김성원 · 김예지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2호).

법률 제 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분야별”을 “성별·분야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